

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시험 일시 · 지역 및 유의사항 등 안내

I 시험 일시 및 지역

가. 대 상 :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

나. 시험일시 : 2026. 1. 24.(토) 10:00 ~ 11:40 (100분) / 4개 과목(과목당 25문항)

다. 응시지역 : 서울

※ 세부 시험장 배정내역은 2026. 1. 16.(금),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

※ 제3차(면접)시험은 대전 지역에서 시행 예정

II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시험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**신분증**을 소지해야 합니다.

- 응시표 출력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 - 마이페이지 - 원서접수 내역 - 응시표 출력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나. 장애인 등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에 제공받은 응시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신규 신청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(III.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)를 참고하여 '26. 12. 19.(금)까지 편의제공 담당자 이메일(sseohyeoni@korea.kr)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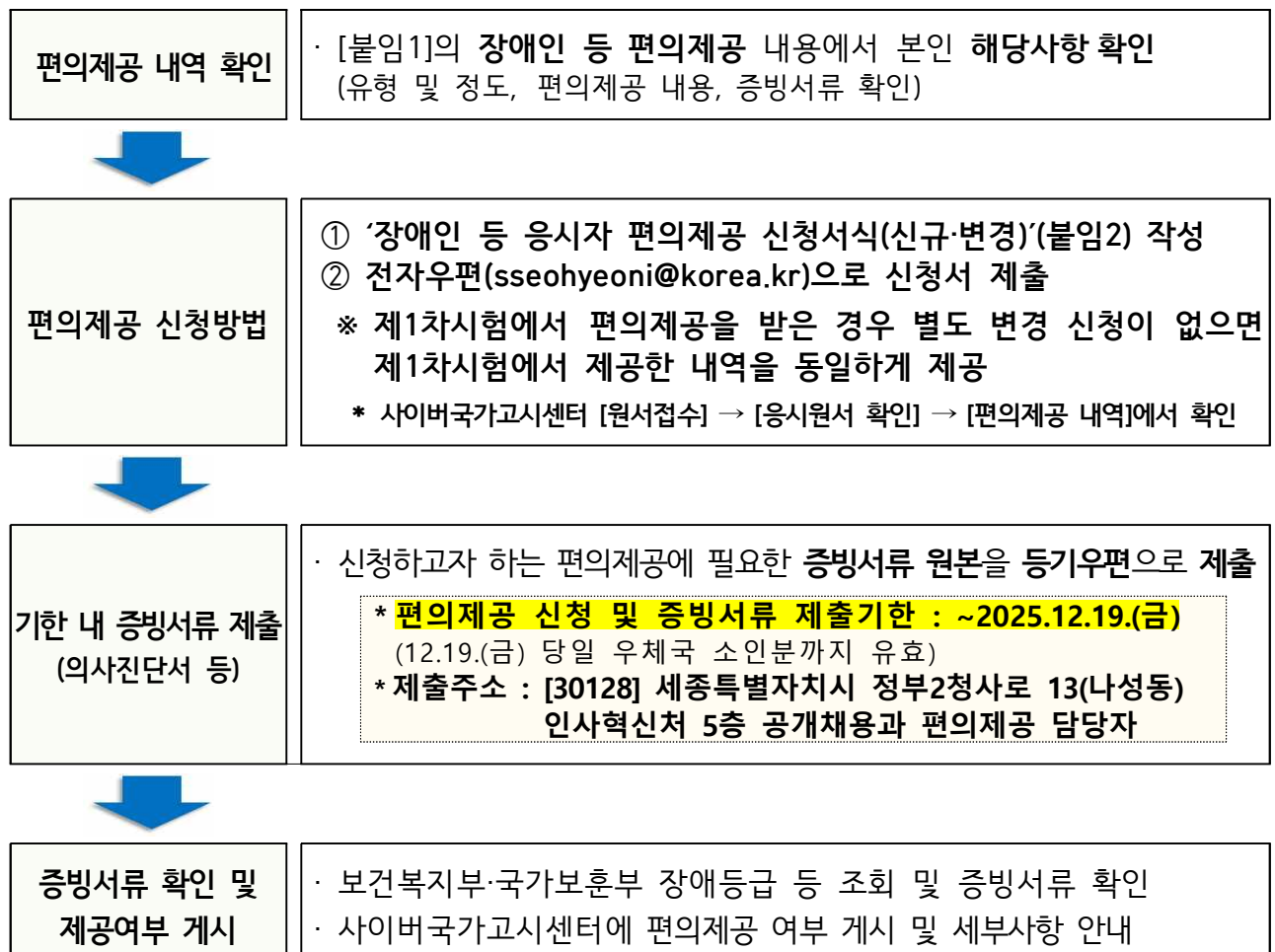
장애인 등 편의 제공 안내

□ 편의제공 대상

-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□ 신청절차

※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에서 제공받은 응시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신규 신청 또는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만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□ 신청시 유의사항

- (붙임 1) 「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」를 반드시 숙지하시고, 편의 제공 신청서(붙임 2) 및 증빙서류(필요시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미제출시 신청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※ 면접시험 편의제공은 **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·접수**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 - ※ 다만, **임신부**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**의원급** 의료기관 및 **병원급**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**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**됩니다.
 - ※ 증빙서류(진단서·소견서) 제출 대상 응시자 중 기존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받았으며, 제출한 증빙서류가 **2023. 9. 20. 이후 발급된 진단서**에 해당하면 증빙서류 제출이 **면제**됩니다.
-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 보완기간이 없으며, 문의사항은 편의제공 신청기간 내(12.17.~12.19.)에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(044-201-8258)로 문의바랍니다.

붙임 1

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(각1부)	비고	
지체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	
시각장애	공통		· 확대/축소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	-*	기존 1~2급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*	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	-*	기존 4~5급 1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*	기존 5급 2호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시력 0.30이하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6급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	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	임신부		· 놀낮이조절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수시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	· 시험 중 화장실 수시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 (원본)	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·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참고	· 확대문제지: A3 규격의 118%(14pt), A2 규격의 150%(18p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	· 확대답안지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	· 축소문제지: A4 규격의 82%(10p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붙임 2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식

시 험 명	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	
신청구분 ※해당항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청	
인적사항	성명 :	응시번호 :
	생년월일 :	연락처 :
장애유형 및 정도	*(예시) 하지지체장애 중증 / 뇌병변장애 경증 / 시각장애 중증(나쁜눈의시력이 0.02 이하) 등	
편의제공 신청항목 (신규·변경 항목)		
제공 필요성		

※ '25.12.19.(금)까지 sseohyeoni@korea.kr로 신청서 제출